

시 방 서

2026. 09.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목 차

I. 공 사 설 명 서	
1. 공사개요 -----	3
2. 공사목적 -----	3
3. 공사범위 -----	3
4. 하자보증 -----	4
5. 설계변경 -----	4
6. 사업현황 -----	4
II.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	6
2. 공사 및 설치 -----	8
III.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	14
2. CCTV 이전설치 -----	15
3. 광케이블 선로 구성 사항 -----	15
IV. 보 안 관 리	
1. 보안관리 및 책임 -----	18
2. 정보보호 준수사항 -----	18

I. 공사설명서

1. 공사 개요

- 가. 사 업 명 : 목동 882 방범용 CCTV 이설공사
-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다. 공사장소 : 목동 882 교통섬

2. 공사목적

- 가. 양천구 통행환경 개선에 따른 확장 및 도로 구조 변경 등 현장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방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범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 가. CCTV 개소 철거
 - Pole, Arm, 함체 1식 (재사용)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재사용)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재사용)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재사용)

- 나. CCTV 개소 설치
 - Pole, Arm, 함체 1식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 Core

4. 하자보증

-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5.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조건

-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 발주부서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한국전력 등 관련 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 공정별, 계통별로 표기 오류 누락 등 당연히 지정되어야 할 사항
- 설계 물량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 CCTV 관련부서의 CCTV 설치가 늦어져 광케이블 연결을 할 수 없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나. 경미한 변경

- 계약상대자는 현장 사정상 기기 및 자재의 설계 위치 또는 설치 공사법 등의 사소한 변경에 의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사업현황

가. 주요사업 범위

- CCTV 개소 철거
 - Pole, Arm, 함체 1식 (재사용)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재사용)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재사용)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재사용)

- CCTV 개소 설치
 - Pole, Arm, 함체 1식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Core

나. 사업대상 상세목록

- 서울시 양천구 목동 882 ,관리번호 : 목110 개소

표. 일반시방서

1. 일반 사항

가. 개요

- 본 시방서는 『목동 882 방범용 CCTV 이설공사』사업에 적용하는 일반 사항으로서 제반규정과 관련된 기술기준에 의하여 공사, 제작, 설치 및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 규격서, 설계서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본 사업설명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어의 정리

- “계약서”라 함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위해 발주부서로부터 감독원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공사의 검수 및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본 공사에 관한 발주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 한다.
- “발주부서”이란 본 공사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성능이 발휘되어 발주부서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 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다. 적용범위

-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공사,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부서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설치장소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기설치 되어 있는 각종 설비(전기/기계/공조/소방)와 구축 시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협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기술기준

- 본 사업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한국공업표준규격(KS)
 -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공사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 전파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ISO, IEEE 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및 설치

가.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제
 - 위임장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독원의 업무

-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재의 반입 금지, 공사의 중지, 공사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재의 반입금지, 공사의 중지, 공사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자재의 반입, 공사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의 경우에는 감독원을 경유하고,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업무처리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타 공사가 진행 중 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 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현장공사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관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부서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 발주기관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련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선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사.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해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납품자재의 규격

-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납품 등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 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사용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기술이어야 하며, 준공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 없이 쉽게 교체 되어야 한다.

차. 시운전

-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을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완료시 각 장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시스템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카. 검수

-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설치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다음과 같은 첨부문서를 포함하여 1부(원본1부, COPY본 1부)를 제본하여 제출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 사업완료 시 제출물
 - 준공계
 - 준공 사진첩
 -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

타. 하자보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일로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 구성품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빈번한 고장(2회 이상) 등의 기타 설비의 결함
- 향후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경미한 사항 4시간, 장비 교체 등 중대사고 24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 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하자보증 기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별도 표기된 장비를 제외하고 검수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한다.

파. 계약의 변경

-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문서로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기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

- 사방서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

Ⅲ. 특별공사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공사 시방서는 『목동 882 방범용 CCTV 이설공사』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자재의 규격, 설치, 설치조건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사업 범위

- CCTV 개소 철거
 - Pole, Arm, 함체 1식 (재사용)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재사용)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재사용)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재사용)

- CCTV 개소 설치
 - Pole, Arm, 함체 1식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 Core

나. 공통 사항

- 모든 장비와 공사자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일괄 보관하여야 하며 공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국제 공인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안전과 신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설명서에 명기된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CCTV 이전설치

가. Pole 기초

- Pole 기초에 사용되는 기초양카는 기존 Pole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 되어야 한다.

나. 접지봉 및 접지전선

- 접지봉 : $\Phi 14\text{mm} \times 1000$
- 접지전선 : F-GV, 35mm^2

다. 카메라 및 기타장치 이전설치

- 카메라 및 기타장치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탈거하여 다시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 재설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광케이블 선로 구성 사항

가. 작업 범위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Core

나. 작업시 주의사항

- 교통처리 계획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앞서 설치 작업 기간 중의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요원배치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음 다음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경과지 선정

- 전송경로는 최소로 하며 작업 및 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및 공원지구, 풍치지구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다. 광케이블 포설

○ 포설

- 가공에 설치하는 전송망의 타 선로와 이격거리 및 지상고는 “접지설비 구내통신 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 도로변 및 도로횡단개소 지상고 유지용 케이블은 전력선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현장여건이 가능한 한 케이블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 전주 등에 광케이블을 가공설치 할 수 없을 때는 IP전주 등을 설치하여 우회경로로 가설하여 연결한다.
- 지중포설이 필요한 경우 매설 깊이 및 간격 규정을 준수하고 배관 및 재료 규격을 준수하여 포설한다.

○ 광케이블 접속

- 배전주에 케이블이 CROSS된 개소와 케이블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할 개소는 스파이럴 슬리브로 감아서 보호한다.
- 광케이블 여유장 처리개소는 허용 곡률 반경을 잘 유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광분배함(FDF)

- 광 분배함의 설치는 함체에 설치 시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며, 광 점퍼코드를 사용하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 광케이블의 선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번장을 분배함에 부착하고 라벨링이 광분배함에 부착되어 있어 케이블 번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을 접속한 후 OTDR 등의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기록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결과가 허용dB 등을 초과한 접속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접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광케이블 성단 작업

- 구청 및 동주민센터, CCTV 등으로 인입된 케이블은 폴링아이를 포함하여 종단에서부터 0.1m 정도를 케이블 절단기로 절단함.
-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20cm되는 지점에 테이프로 감아 탈피지점을 표시
- 중심인 장선을 외피탈피지점으로부터 15cm정도 남겨두고 절단함.
- 광섬유심선과 광점퍼코드의 접속은 용착접속을 사용함
- 접속부는 반드시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IV. 보안관리

1. 보안관리 및 책임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정보통신실 출입 시 발주부서의 시스템 담당자나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나 공사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정보보호 준수사항

"발주부서"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발주부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발주부서"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다.

-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발주부서"에 반환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부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휴대용저장매체는 Format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후 반출한다.
- PC 자체폐기 및 타기관 양여시 반드시 하드디스크는 본체에서 제거하여 물리적으로 파기후 시행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 "발주부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사업종료시

- 사업 종료시 반드시 관련 자료는 담당자에 반납하고, 관련 PC는 로우포맷을 1회 실시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부서"에 있다.
-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반드시 관련 자료는 담당자에 반납하고, 관련 PC는 디가우징을 1회 실시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